

3 부채 / 채무 / 채권

3-1 통합부채현황

-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 분 | 2023년 | 2024년 | 증감 |
|---------|--------|--------|-------|
| 통합자산 | 46,515 | 50,800 | 4,285 |
| 통합부채 | 510 | 3,457 | 2,947 |
| 유동부채 | 195 | 2,598 | 2,403 |
| 장기차입부채 | 149 | 682 | 533 |
| 기타비유동부채 | 166 | 177 | 11 |

- ▶ '24년 결산 순계기준
- ▶ 우리 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3개를 포함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됩니다.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우리시의 결산기준 통합자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4,285억 증가하였고, 통합부채는 2,947억 증가하였습니다.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 2023년 | 2024년 | 증 감 | 비고 |
|-----------------------|--------|--------|--------|----|
| 자산(A) | 46,488 | 47,824 | 1,336 | |
| 부채(B) | 443 | 386 | △57 | |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 0.95% | 0.81% | △0.14% | |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 2023, 202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우리 시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0.8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5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3-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2023년 | | | | 2024년 | | | | |
|------|------------|-----------|--------------------|-------------------|-----------|-----------|--------------------|-------------------|--------|
| | 자산 (A) | 부채 (B) | 자본 (순자산) (C) | 부채비율 (B/C)×100 | 자산 (A) | 부채 (B) | 자본 (순자산) (C) | 부채비율 (B/C)×100 | |
| 합계 | 7,375 | 185 | 7,190 | 2.57% | 6,866 | 221 | 6,646 | 3.33% | |
| 직영기업 | 소계 | 6,832 | 145 | 6,687 | 2.17% | 6,258 | 126 | 6,132 | 2.05% |
| | 거제시상수도 | 1,959 | 0 | 1,959 | 0.00% | 1,628 | 0 | 1,628 | 0.00% |
| | 거제시하수도 | 4,873 | 145 | 4,728 | 3.07% | 4,630 | 126 | 4,504 | 2.80% |
| 공사 | 소계 | 542 | 40 | 503 | 7.97% | 608 | 94 | 514 | 18.29% |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542 | 40 | 503 | 7.97% | 608 | 94 | 514 | 18.29% |

※ 2023년, 2024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우리 시의 직영기업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거제시 하수도로 부채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차입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부채는 대행사업 예수금과 거제관광모노레일 민간투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치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여 대부분의 부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20년(사업기간)동안 안분하여 수익으로 대체처리 할 예정입니다.

3-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2023년 | | | | 2024년 | | | | |
|----------|---------------------|-----------|--------------------|-------------------|-----------|-----------|--------------------|-------------------|-----------|
| | 자산 (A) | 부채 (B) | 자본 (순자산) (C) | 부채비율 (B/C)×100 | 자산 (A) | 부채 (B) | 자본 (순자산) (C) | 부채비율 (B/C)×100 | |
| 합계 | 2,953 | 2,834 | 122 | 2324.5% | 3,048 | 2,976 | 72 | 4148.69% | |
| 출자 기관 | 소계 | 2,802 | 2,800 | 5 | 54,181.2% | 2,911 | 2,938 | △27 | △10874.9% |
| | 빅아일랜드인 거제피에프비(주) | 2,802 | 2,800 | 5 | 54,181.2% | 2,911 | 2,938 | △27 | △10874.9% |
| 출연 기관 | 소계 | 151 | 34 | 117 | 29.57% | 137 | 38 | 99 | 38.80% |
| |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 52 | 34 | 17 | 200.86% | 38 | 38 | 0 | △49016.6% |
| |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 99 | 0 | 99 | 0.00% | 99 | 0 | 99 | 0.00% |

우리 시의 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으로 대극장 공사로 인하여 음향반사판 등 계약 후 미지급금으로 인한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비(주):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절차 수행 불가능

3-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 2023년 | 2024년 | 증감 |
|--------------------|-----------------------|-------|-------|----|
| 계 | | 0 | 0 | 0 |
| 보증채무 부담행위 | 소계 | 0 | 0 | 0 |
| | 자산유동화 증권 ^① | 0 | 0 | 0 |
| | 금융기관 차입금 ^② | 0 | 0 | 0 |
| 예산외 의무부담 | 소계 | 0 | 0 | 0 |
| | 공공토지비축협약 ^③ | 0 | 0 | 0 |
| | 부지매입협약 ^④ | 0 | 0 | 0 |
| | 비용부담 협약 ^⑤ | 0 | 0 | 0 |
| | 기타 협약 ^⑥ | 0 | 0 | 0 |
| 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0 | 0 | 0 |
| 채무부담행위(미발생액) | | 0 | 0 | 0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입니다.

3-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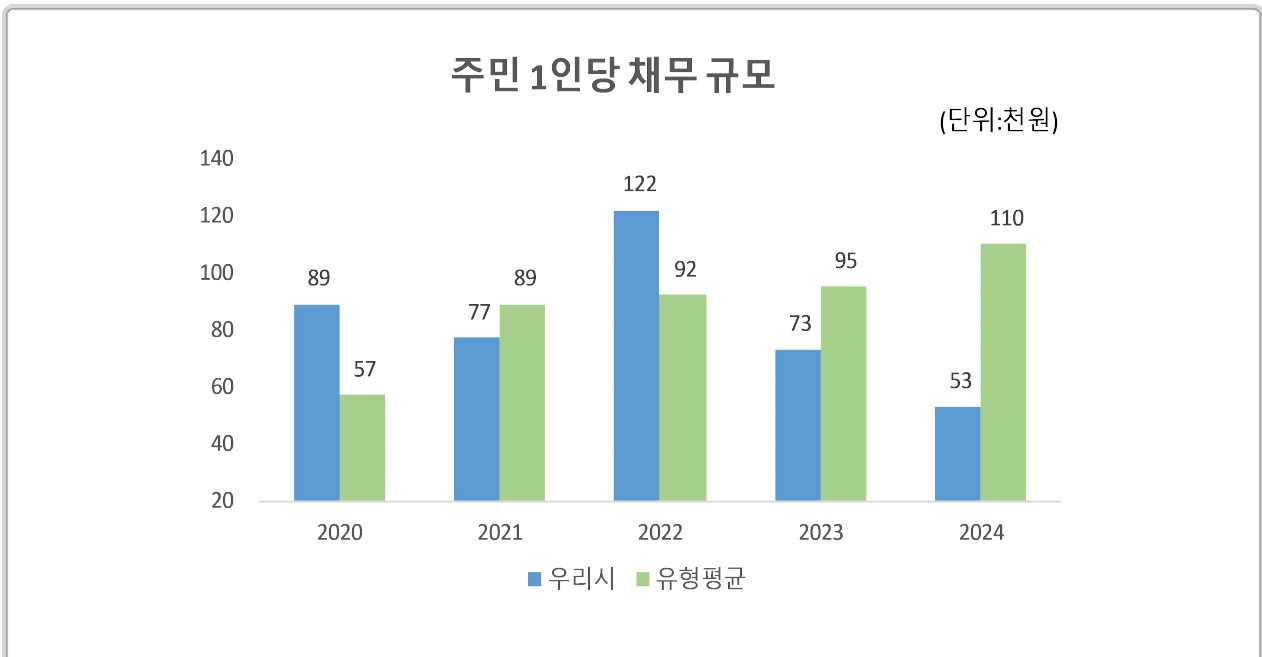
| 구 분 | '23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 | '24년도 현재액 E=(A+B) |
|-----------------|--------------------------------------|--------------|------------|------------|-------------------------|
| | | 계 (B=C-D) | 발생액 (C) | 소멸액 (D) | |
| 합 계 | 17,060 | △4,810 | 0 | 4,810 | 12,250 |
| 일 반 회 계 | 3,060 | △3,060 | 0 | 3,060 | 0 |
| 기타 특별 회계 | 지하수특별회계 | 0 | 0 | 0 | 0 |
|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 | 0 | 0 | 0 | 0 |
| |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 0 | 0 | 0 | 0 |
| |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 0 | 0 | 0 | 0 |
| |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 0 | 0 | 0 | 0 |
|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 0 | 0 | 0 | 0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0 | 0 | 0 | 0 |
| 공기업 특별 회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0 | 0 | 0 | 0 |
|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4,000 | △1,750 | 0 | 1,750 |
| 기 금 | 장학기금 | 0 | 0 | 0 | 0 |
| | 옥외광고발전기금 | 0 | 0 | 0 | 0 |
| | 남북교류협력기금 | 0 | 0 | 0 | 0 |
| | 자활기금 | 0 | 0 | 0 | 0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0 | 0 | 0 | 0 |
| | 고향사랑기금 | 0 | 0 | 0 | 0 |
| | 노인복지기금 | 0 | 0 | 0 | 0 |
| | 양성평등기금 | 0 | 0 | 0 | 0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기금 | 0 | 0 | 0 | 0 |
| | 식품진흥기금 | 0 | 0 | 0 | 0 |
| | 재난관리기금 | 0 | 0 | 0 | 0 |

우리 시는 2024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총 48억원을 상환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123억원입니다.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 연 도 별 | | | | |
|------------------|---------|---------|---------|---------|---------|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채무현황 | 21,848 | 18,567 | 28,990 | 17,060 | 12,250 |
| 인구수 | 245,754 | 241,216 | 236,662 | 234,038 | 232,972 |
| 주민 1인당채무 (천원) | 89 | 77 | 122 | 73 | 53 |



3-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 연 도 별 | | | | |
|---------------|-------|------|--------|-------|------|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333 | 443 | 488 | 545 | 762 |
| 발행액(B) | 0 | 0 | 140 | 15 | 0 |
| 발행비율(B/A*100) | 0% | 0% | 28.69% | 2.75% | 0%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0.0,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0.00,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 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서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62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발행액은 0원입니다. 발행액 및 발행비율은 '23년 대비 15억원, 2.75% 감소하였으며, 발행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3-8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 우리 시의 202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3-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3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4~'28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5.12. 작성 후 공시예정)

3 - 11 보증채무 현황

-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거제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우리 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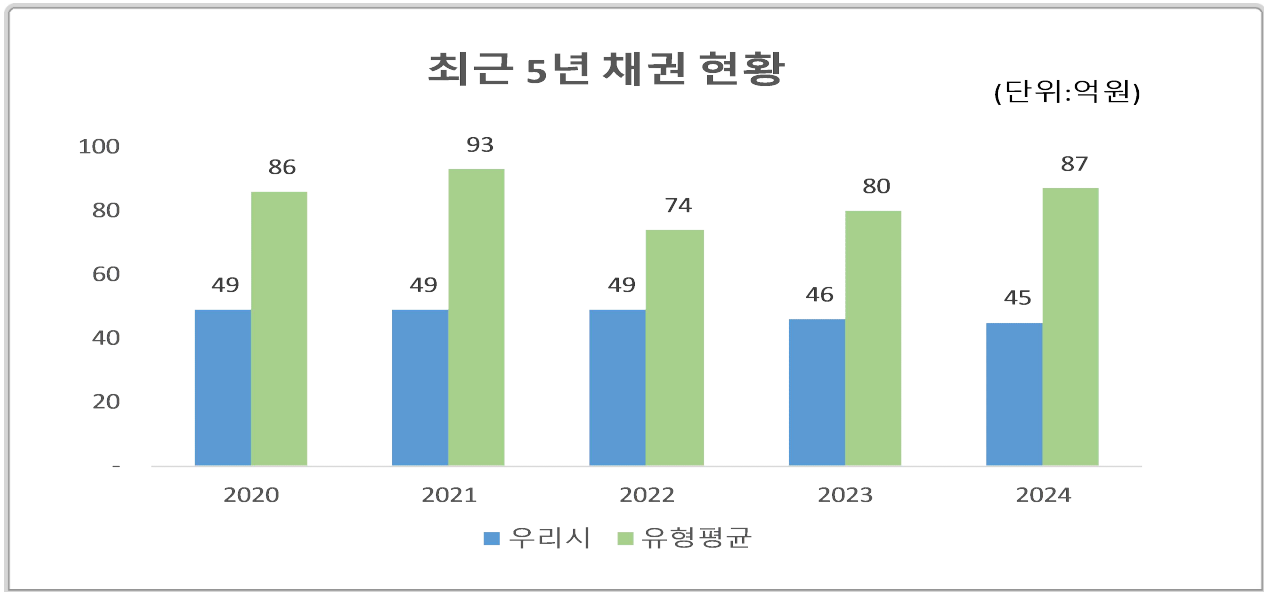
3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 '23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 | '24년도 현재액 (A+B) |
|-------------|--|--------------|--------|--------|-----------------------|
| | | 계 (B=C-D) | 발생액(C) | 소멸액(D) | |
| 합 계 | 46 | △1 | 0 | 1 | 45 |
| 일 반 회 계 | 46 | △1 | 0 | 1 | 45 |
| 기타 특별회계 | 지 하 수 특 별 회 계 | 0 | 0 | 0 | 0 |
|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 타 특 별 회 계 | 0 | 0 | 0 | 0 |
| |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 0 | 0 | 0 | 0 |
| |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 0 | 0 | 0 | 0 |
| | 대대이전 및 양여부 지 개발사업 특별회 계 | 0 | 0 | 0 | 0 |
|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 별 회 계 | 0 | 0 | 0 | 0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0 | 0 | 0 | 0 |
| 공기업 특별회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0 | 0 | 0 | 0 |
|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0 | 0 | 0 | 0 |
| 기금 | 장 학 기 금 | 0 | 0 | 0 | 0 |
| |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 0 | 0 | 0 | 0 |
| |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 0 | 0 | 0 | 0 |
| | 자 활 기 금 | 0 | 0 | 0 | 0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0 | 0 | 0 | 0 |
| | 고 향 사 랑 기 금 | 0 | 0 | 0 | 0 |
| | 노 인 복 지 기 금 | 0 | 0 | 0 | 0 |
| | 양 성 평 등 기 금 | 0 | 0 | 0 | 0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기금 | 0 | 0 | 0 | 0 |
| | 식 품 진 흥 기 금 | 0 | 0 | 0 | 0 |
| | 재 난 관 리 기 금 | 0 | 0 | 0 | 0 |

▶ '2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